■ 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2서식] <개정 2022. 3. 31.>

부과금 [ ] 징수유예 [ ] 분할납부 [ ] 징수유예기간연장 [ ] 결정 [ ] 거부결정 통지서

관리번호	

성명		생년월일		사업자등록번호	
주소			전화번호		
상호 또는 명칭					
사업장 소재지					
사업의 종류			종목		

부과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금액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
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

거부결정 사유	

귀하가 20 . . .에 신청한 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거부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.

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